

체육대학원내규

시행 : 2025.03.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제2조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체육의 이론과 실제를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교육하여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정) ① 본 대학원에는 학위과정으로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두며, 비학위과정으로서 연구과정과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본 대학원은 「산업교육진흥및 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전공(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위과정의 전공(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

③ 연구과정은 전공별로 약간 명의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④ 특별과정은 그 특성과 환경에 따라 1학기 또는 2학기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의 전공명칭은 모집정원 또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장 학사운영위원회 및 직제

제5조(조직의 구성)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부대학원장 및 각 전공주임교수(학과장)를 둔다.

제6조(학사운영위원회) ①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6인 이내로 구성하며, 본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전공주임교수(학과장) 및 행정실장의 당연직과 전임교원 중 본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임명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경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본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심의

2.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기타 본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장 입학

제7조(입학전형위원회) ① 입학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입학전형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대학원장이 되며, 부대학원장, 각 전공주임교수(학과장) 또는 본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③ 입학전형위원회는 위원장인 본 대학원장의 책임 하에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제8조(입학전형)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방법은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한다.
② 서류심사와 면접의 세부 항목과 배점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지원자격) ①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② 본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제10조(입학취소) 본 대학원 입학전형 합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 1. 등록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 2. 허위 또는 부적격 서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입학한 자

제11조(지원절차)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입학원서
- 2. 학사 또는 석사 졸업(예정)증명서
- 3.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전적 대학(원)에 편입한 자는 전적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 4. 학업(연구)계획서
- 5. 이력서(연구 및 강의경력서 포함)
- 6. 기타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2조(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① 외국인에 대한 입학전형방법은 면접으로 한다.

- ② 외국인에 대하여는 한국어와 영어 구사 능력을 검증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1. TOPIK 3급 이상 취득자
- 2. 외국대학 한국어학과 졸업자
- 3. 한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 4. 위와 동등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자

제13조(외국인 학생의 입학허가신청서류) 외국인 학생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입학원서
-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 증명서
-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4. 최종학교 지도교수 추천서
- 5. 학업(연구)계획서
- 6. 자기소개서
- 7.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미화 \$ 20,000 상당액 이상을 입학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예치한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국내송금증명서
- 8.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한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9. 기타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4조(편입학) ① 국내·외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는 본 대학원 해당 학위과정에 편입학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전형은 연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다.

③ 편입학 전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형료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대학졸업 및 성적증명서

3. 전적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4. (박사학위과정 편입학의 경우) 전적 대학원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5. 학업(연구)계획서

6. 이력서(연구 및 강의경력서 포함)

④ 편입학한 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을 수학하여야 한다.

⑤ 편입한 자가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공주임교수의 확인 및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석사학위 과정은 9학점까지,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재입학) ① 본 대학원에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③ 입학 후 최소 1개 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④ 재입학 학기와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 재입학자는 최초 신입학 학번을 따라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최초 신입학 학번의 졸업이수요건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입학 당시 학번의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⑥ 제적 및 자퇴 전의 모든 학적사항을 승계한다.

⑦ 재입학할 경우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학금은 재입학할 학기의 신입생 입학금과 같다.

제4장 수업·학점 및 성적

제16조(수업운영) 본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과 야간 모두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개 학기)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2개 학기), 특별과정은 6개월에서 1년으로 한다.

제18조(수업방법) 본 대학원의 수업은 일반강의와 특별강의로 구성되며, 세미나, 특강, 집단토론, 팀티칭, 해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수업과목) 본 대학원 학생의 수업과목은 전공공통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제20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본 대학원생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급제(Pass)과목, 선수과목은 취득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과정의 취득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21조(학점취득) ①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제22조 제1항 각 호의 출석 인정 포함)하고, 해당과목의 성적이 D-(평점 0.7)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제 출석하여 학점취득을 인정한다.

③ 본 대학원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4학점까지 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Pass/Non-Pass 학점은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22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에는 소정 양식의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갖추어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교강사는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 (5일)
2.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통지서 기재일자)
3. 정부기관 또는 학교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석의 사유 (해당일)
4. 교육실습 및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학습답사, 연수, 훈련, 행사 등의 참가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
5. 생리공결에 의한 사유 (월1회/1일)
6.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유 (4주 이내)
7.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채용시험 응시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
8.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20일, 배우자:10일)
9.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 (해당기간)

② 전항의 각 호 사유를 합산한 최대 출석인정일수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제23조(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본 대학원 입학 이전에 국내·외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본 대학원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B학점 이상 취득한 자가 소정양식에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까지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② 타 대학원 취득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제17조 제1항의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제24조(일반/전문대학원과의 학점교류 및 전공 간 교차수강) ① 본 대학원생은 소속 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본 대학원생은 학기당 1과목에 한하여 본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과의 학점교류 및 본 대학원 내 전공 간 교차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복학 후 개설된 교과목만으로는 수강신청이 제한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학점교류 및 교차수강을 신청하는 자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행정실에 제출한다.

제25조(타 대학원 학점인정의 제한) 본 대학원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는 학점은 석사과정 최대 12학점, 박사과정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편입학한 자가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하여 본 대학원에서 인정한 학점
2. 타 대학원과의 학점교류를 통해 취득한 학점(논문대체과목 포함)
3. 본 대학원 입학 이전에 국내·외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본 대학원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본 대학원에서 인정한 학점

제26조(선수학점) ① 전적 대학(원)에서 유사전공(학과) 또는 타 전공(학과) 졸업자는 학위과정별 수료학점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수학점을 취득(D- 이상, 재수강 가능)하여야 한다.

1. 유사전공(학과) 졸업자 : 6학점
2. 타 전공(학과) 졸업자
 - 가. 석사학위과정 : 9학점
 - 나. 박사학위과정 : 12학점
- ② 선수학점 교과목은 본교 체육대학에 개설된 이론강좌에 한한다.
- ③ 외국인 학생은 선수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 ④ 선수학점인정서에 전공주임교수(학과장) 확인을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7조(지도교수 배정) ① 학위과정의 학생은 제2기에 지도교수를 신청하여 배정받는다.

② 지도교수 신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본 대학원의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하고 신청 해당 년도 직

전 3년 기준 연평균 연구실적 100점 이상인 자(본 자격기준의 연구실적 평정기준은 교수연구실적 평정규정을 적용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연구실적기준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확인과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확인과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타 대학 교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지도교수가 기 배정된 원생은 지도교수의 퇴직, 휴직, 장기출장 등으로 1년 이상 논문지도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안에 현 지도교수와 변경 지도교수의 확인 및 전공주임교수(학과장),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현 지도교수가 퇴직한 경우에는 현 지도교수 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28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29조(분할납부) ① 재학생은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이하 "분할납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분할납부는 해당 학기 등록금 총액을 3회까지 분할하여 본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할납부는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제2기부터 제4기까지의 재학생에 한하여 허용한다.

④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대상자, 신입학자, 편입학자, 재입학자는 분할납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학생이 정해진 기일 내에 분할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된다.

⑦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수업연한 이후 등록) 수업연한 내에 수료를 하지 못하거나, 수업연한 이후 논문대체학점을 추가로 취득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학점 ~ 3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2. 4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3. 급제(Pass), 선수과목 : 해당학기 등록금의 5분의 1

4. 전공시험 : 해당학기 등록금의 10분의 1

제31조(입학금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을 반환한다.

1.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전까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부정입학자로 확인된 자가 이미 납부한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2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3]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③ 입학이 허가된 자로서 학력사항 혹은 입학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밝혀져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이하 "부정입학자"라 한다)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33조(연구등록) ① 학위과정 수료 후 학위청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본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지도교수의 연구논문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2. 재학생에 준하는 연구를 위한 시설(도서관 및 실험실습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③ 연구등록금은 수료 후 1회에 한하여 해당학기 등록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제34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본 대학원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지도하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확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신청한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1. 본 대학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과목을 폐강하거나 유사 과목과 통폐합 하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 대학원장의 수강과목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④ 전항에 따른 수강과목변경은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전공주임교수(학과장)를 경유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폐강기준) 강의과목별로 수강신청자가 3인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장 학적변동

제36조(휴학) ①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총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할 경우에는 특별휴학으로 인정하며, 전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외파견으로 인한 휴학은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매 학기마다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본인의 임신·출산(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에 한함) 및 육아(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 한함)로 인한 휴학은 최대 2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각각 임신진단서(임신), 출생신고서(출산), 가족관계증명서(육아) 등 본 대학원장이 정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휴학 신청자는 휴학신청 기간 내에 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입학 당해 학기에 휴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입학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의무복무에 한함)

2. 학생 본인이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3.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37조(복학)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복학한다.

제38조(제적) 본 대학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제7장 전공시험

- 제39조(전공시험) 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학위과정에서 18학점을 이수하고 평균성적이 C(평점평균 2.0) 이상인 경우 전공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전공시험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④ 불합격 시 당해 학기 내 1회에 한하여 재응시가 가능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9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40조(시험시기와 신청) ① 4월과 10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일시는 시험일 2주 전까지 본 대학원장이 공고한다.

- ②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출제 및 시험관리) ① 시험문제는 전공별 교육과정 내에서 전공주임교수(학과장)가 정하여 출제한다.
② 전공시험은 부대학원장이 관리한다.

제8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42조(수료 및 졸업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학생에 대해 해당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1.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
 2. 정해진 교과과정 및 학위과정별 수료학점 이수
 3. 유사전공 또는 타 전공으로 분류된 학생은 선수학점 이수(단, 외국인학생은 선수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4. 전공시험 합격
- ②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학점은 전공필수, 전공선택 및 전공공통을 합하여 총 24학점으로 한다.
- ③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학점은 전공필수, 전공선택 및 전공공통을 합하여 총 36학점으로 한다.
- ④ 과정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이수하였으나, 전공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을 유예한다.

제43조(논문지도) ① 학위지도교수는 학위과정의 제2기에 정한 지도교수로 한다.

- ② 논문예비계획서 제출은 제3기부터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논문공개발표)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준비하는 자는 논문계획서 또는 중간결과보고를 공개발표 하여야 하고,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준비하는 자는 논문계획서 발표 후 논문결과발표를 하여야 한다.

- ② 공개발표는 전공시험에 합격하여야 실시 가능하다.
- ③ 공개발표에 합격한 경우 당해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5개 학기 동안 그 효력을 인정한다.
- ④ 공개발표의 심사자는 석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 1인 및 심사위원 1인 이상, 박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 1인 및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관련 전공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 ⑤ 지도교수를 포함한 모든 참관자는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 ⑥ 공개발표의 결과는 석사과정은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1명이, 박사과정은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2명이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⑦ 지도교수는 공개발표 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기재하여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공개발표 종료 후 1주 이내에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이 외에 논문공개발표에 관한 사항은 논문공개발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45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시기 및 요건) ① 본 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예정자
2. 수료학점의 평균성적이 B(3.0) 이상인 자
3. 유사전공 또는 타 전공으로 분류된 학생은 선수학점 이수(단, 외국인학생은 선수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4. 전공시험 및 공개발표에 합격
5. 논문지도과목을 이수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이수예정인 자
 ②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 논문계획서 또는 중간결과보고 공개발표에 합격한 학기부터 가능(단, 4학기 이상이어야 함)
 2. 박사과정 : 결과를 공개발표한 자는 공개발표에 합격한 학기부터, 논문계획서를 공개발표한 자는 공개발표에 합격한 학기의 차기 학기부터 가능(단, 4학기 이상이어야 함)
 -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과정 입학 후 본교 또는 본 대학원 소속으로 학술지 1편 게재 또는 학술대회 2회 이상 발표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이상 논문게재(예정 포함)
 - 논문은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이어야 한다.
2.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심사용 논문제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학기 중 지정된 기일 내에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용 논문 3부를, 박사학위의 경우 심사용 논문 5부를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료와 함께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논문초록) 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48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획득하고,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합격한다.
- ②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3인 이상(외부심사위원 1인 가능),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은 5인 이상(외부심사위원 2인 가능)으로 구성한다.
- ③ 제2항의 내부심사위원은 본교 체육대학 및 체육대학원 소속의 전임교원 중에서 학위지도교수가 추천한 자, 외부심사위원은 본교 타대학(원) 소속의 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전문가 중에서 학위지도교수가 추천 한 자 중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 ④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후 합격 또는 불합격 결과가 기재된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9조(논문의 제출) ① 논문심사에 통과된 자는 학위논문 원문파일과 하드커버로 제작된 논문 3부(1부는 인준지 원본 포함)를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을 중앙도서관에 제출한 후, 학위논문 수령증, 원문파일, 표제지 및 인준지 사본을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0조(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을 대신하여 9학점의 논문대체과목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논문제출 없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단, 스포츠 데이터 · 네트워크 · AI 플러스(DNA+) 학과는 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 ② 논문대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예정자
 2.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자
 3. 유사전공 또는 타 전공으로 분류된 학생은 선수학점을 이수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이수예정인 자(단, 외국인학생은 선수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4. 전공시험에 합격한 자
- ③ 논문대체의 신청은 제3기부터 가능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 학위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아 본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 ④ 논문대체과목은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과목에 한하나,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관련 과목을 논문대체과목으로 이수하고자 할 경우, 한 학기 1과목에 한하여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하여 학점교류로 신청할 수 있다.
- ⑤ 논문대체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각 논문대체과목의 성적이 B0학점(3.0) 이상이어야 한다.
- ⑥ 논문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논문지도과목은 이수하지 아니한다.

제51조(학위수여) ①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하거나 논문대체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제5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스포츠 데이터·네트워크·AI 플러스(DNA+) 학과는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③ 학위수여시기는 매 해당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

제52조(수료증) 수료요건을 만족한 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53조(학생의 의무) 본 대학원의 학생은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 및 본 대학원 내규를 비롯한 교내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본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전공주임교수(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54조(징계) ① 학생이 학생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 ② 징계의 종류는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 ③ 견책, 근신, 유기정학 처분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행하고, 무기정학과 제적은 본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제55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애교심이 있는 자
 2. 수혜요건이 정해진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자
 3. 총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② 제1항 제1호의 학업성적은 직전학기 평균평점 B학점(3.0)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며, 교내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2]와 같이 하되, 당해 연도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 ④ 교외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 등은 장학금을 기탁한 국가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내규에 따른다.

제56조(장학금의 이중수혜) 장학금은 이중수혜 할 수 없다. 단, 해당학기 등록금(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포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성적장학, 조교장학, 가계곤란장학, 해외연수장학 등)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7조(지급기간) 장학금은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의 학생에게 통산 4개 학기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선정절차)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전공주임교수(학과장) 또는 부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제10장 보칙

제59조(보칙)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내 제 규정을 준용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본 개정 내규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31조,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학년도 이전에 입(편)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구 내규를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취득학점 및 편입학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본 개정 내규 제13조, 제21조의 규정은 2006학년도 이전에 입(편)학한 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수업연한 및 취득학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본 개정 내규 제11조, 제15조, 제18조의 규정은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5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5년 이전 입학자의 경우에는 기준 전공에 따른 학위를 취득한다.

②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로 소급적용한다.

③ 제35조 제3항의 규정은 2016년 전기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수료와 논문공개발표에 관한 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41조(수료)와 제43조(논문공개발표)에 관한 요건은 2016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본 내규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③ (논문대체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49조(논문대체) 제1항에 관한 요건은 2016년 8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④ (논문대체 신청에 관한 예외조치) 본 내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49조(논문대체) 제2항에 관한 요건은 2016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6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4기 또는 학적상태가 '수료'이여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료'후 논문대체신청자는 반드시 한 학기를 등록 하고 1개 과목 이상을 수강 후 학점취득하여야 한다.

부칙

- ① 본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2]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에서 ‘조교장학’은 입학년도와 상관없이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스포츠커뮤니케이션융합 전공 및 태권도·골프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스포츠커뮤니케이션융합 전공 및 태권도·골프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 당시 전공을 유지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7장 전공시험은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본 내규 개정사항은 시행일 현재 재학중인 자에게도 적용한다. 단, 제26조 제1항의 개정사항(전공분류 기준에 전적 대학원도 반영)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논문공개발표에 대한 경과조치) 제4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학년도 이전(2019학년도 포함)에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는 논문계획서 또는 논문결과발표 중 택일하여 공개발표할 수 있다. 단, 논문결과발표는 제4기부터 가능하다.
제4조(다른 규정의 폐지) 체육대학원 논문공개발표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포츠산업·경영 전공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0학년도 1학기 이전에 스포츠산업·경영 전공으로 입학한 자(박사과정)가 2020년 4월 28일부로 재적중인 경우, 그 소속을 스포츠빅테인먼트 전공으로 일괄 변경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본 내규 개정사항은 시행일 현재 재학 중인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본 내규 개정사항은 시행일 현재 재학 중인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2조(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2조(스포츠빅테인먼트 전공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스포츠빅테인먼트 전

공(석·박사과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 당시 전공을 유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7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위과정

학과 또는 전공	학위과정	모집 정원
스포츠의·과학 전공	석사과정	35명
태권도학 전공	석사과정	
글로벌스포츠산업 · 경영 전공	석사과정	
스포츠 데이터 · 네트워크 · AI 플러스(DNA+) 학과	석사과정	

* 스포츠산업·경영(석사과정) 및 스포츠·태권도학 전공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기존 전공 학위 취득하며 스포츠커뮤니케이션융합 전공 및 태권도·골프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 당시 전공을 유지함.

전 공	학위과정	모집 정원
스포츠의·과학 전공	박사과정	20명
태권도학 전공	박사과정	
글로벌스포츠산업 · 경영 전공	박사과정	

* 스포츠빅데이터 전공(석 · 박사과정)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입학자는 입학 당시 전공 을 유지함.

* 스포츠 데이터 · 네트워크 · AI 플러스(DNA+)학과(석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스포츠 데

이터 · 네트워크 · AI 플러스(DNA+)학과 운영 지침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함.

[별표2]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장학종류	지급액 (%)	지급대상
경희동문장학	석·박사/ 비학위 수업료 13%	본교 및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 졸업자
우수신입생장학	석사 수업료의 전액 또는 일부	본 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성적장학	석·박사/ 비학위 5% - 전액	성적이 우수한 자 중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모범장학	석·박사/ 비학위 5% - 전액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총장장학	석·박사/ 비학위 50% - 전액	본 대학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본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승인한 자
목련장학	석·박사/ 비학위 5% - 전액	본 대학원의 가계곤란 기준에 해당하는 가계곤란자로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조교장학	석·박사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교내 조교로 소속부서의 발령을 받은 자

* 경희동문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운행제를 통해 본교 총장 명의로 학위를 수여받은 경우도 포함함.

[별표3] 등록금 반환기준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은 다음
표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등록금 반환 발생일은 재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일, 휴학생의 경우에는 휴학기간 중 최초 휴학신청 일 기준으로 하며 상기 제2호에서 정한 [반환사유 발생일]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평일을 해당기간의 말일로 한다.
4. 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 학력사항 또는 입학관련 서류의 위·변조 등으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금(입학금 포함)은 반환하지 않는다.